

인천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253273 판결 [분양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가칭 B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본

담당변호사 최규성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26.1) 부터 2022.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연대하여’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28. 피고 가칭 B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시행 중인 인천시 미추홀구 D 일원에 신축하는 조합원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액 47,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분양자인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실, 피고들은 2021. 10.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2022. 2. 25.까지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22. 1. 24. 5,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환불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47,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5,000,000원을 뺀 나머지 42,000,000원 및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9.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자신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일 뿐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환불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돈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1)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2. 2. 26.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